# 2018년('17년 실적) 기록관리 기관평가 계획

2018. 2.



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

## 목 차

1.	추진개요	1
	가. 추진배경 및 근거1	
	나. 그간의 경과1	
2.	. 2018년('17년 실적) 평가 추진계획	2
	가. 평가대상기관2	
	나. 평가방식 및 지표3	
	다. 평가방법3	
3.	. 향후 일정	4

## 2018년(17년 실적) 기록관리 기관평가 계획

## 1 추진개요

#### 가. 추진배경 및 근거

- 공공기관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제도정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(제9조)에 따라 각급기관 기록관리 현황 평가
- 2018년은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기록관리 역량강화 지원 및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상기관 및 평가방식 조정
  - 477개 기관에서 평가우수기관\*(82개) 및 중앙행정기관(20개) 제외
  - 국가기록원 직접평가 미실시
    - \* 2회 연속 가등급 또는 3회 평균 90점 이상 기관(중앙행정기관 32개 포함)

#### 나. 그간의 경과

- '08~'17년 기록관리 평가 최초 실시 및 대상기관·유형 확대
  - '08년(57개) → '09년(110개) → '10년(229개) → '11년(240개) → '12년(443개) → '16~'17년(476개)
- '15~'16년 중앙부처·시도교육청 대상 기본업무 외 정책과제 평가
- '17년 평가지표 세분화: ('15~'16년) 10~11개 지표 ⇒ ('17년) 22~25개 지표※ '18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(안) 사전 안내('17.4.)
- '17년 12월 평가유예 지시(원장) 및 '18년 평가 방안 설문조사 실시
- '18년 1월 평가방식 변경 관련 국가기록관리위 및 정책전문위 심의

### 2 2018년('17년 실적) 평가 추진계획

#### - 〈기본방향〉

- 기록관리 자율평가로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
- 평가우수기관 등은 자체 기록관리에 역량을 강화하도록 평가제외

#### 가. 평가대상기관

○ 평가대상 : 특별지방행정기관, 교육청, 국·공립대학 등 375개 기관

합 계	특별지방	시·도	교육	정부산하	국·공립
	행정기관 등	교육청	지원청	공공기관	대학교
375	138	9	154	27	47

<sup>※</sup> 중앙행정기관(18년 평가 20기관)은 관할 공공기관 지도 • 감독 집중을 위해 평가 제외

○ 평가대상기관을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

#### <평가유형 및 대상기관>

유형별 기관 (기관수)	'18년 평가	비고
중앙행정기관(52개)	_	2년 연속 가등급
특별지방행정기관(143개)	138개 기관	
시・도교육청(17개)	9개 기관	또는 3년 연속
교육지원청(176개)	154개 기관	90점이상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제외
정부산하공공기관(39개)	27개 기관	
국·공립대학교(50개)	47개 기관	
477개	375개	

※ 2018년 기록관리 평가대상기관 목록 : 【붙임1】참조

#### 나. 평가방식 및 지표

- (평가방식) 대상기관 자율평가 실시, 그 결과를 국가기록원에 제출
  -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측정기준 【붙임2】에 따라 자율평가 실시 후, 국가기록원에 '자율평가표' 【따로 붙임】를 공문으로 제출 ※ 기록관리평가시스템(RMES) 실적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은 없음
- **(평가지표)** 기관유형별 22~25개
  - '17년('16년 실적) 평가지표 및 기 통보('17.4.)한 지표와 동일

▶ 기록관리 업무기반(10개 지표)	- 기본계획 및 시설·장비 구축 - 조직·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- 교육 이수 및 지도감독 실적 -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여부
▶ 기록관리 업무추진(11개 지표)	<ul> <li>조사연구검토서, 회의록, 시청각기록물, 행정박물, 간행물 관리의 적절성</li> <li>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3개 지표</li> <li>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</li> <li>기록물 재난대책 및 평가폐기의 적절성</li> </ul>
▶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(4개 지표)	-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및 정보서비스 -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(정성지표) - 기록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력

※ 시 • 도교육청 평가지표 기준임

#### 다. 평가방법(국가기록원)

○ **대상기관이 자율평가한 점수 수용,** 다만 법령 위반사항 등의 언론보도, 평가결과 미제출 기관, 자율평가 결과가 '17년 대비 2등급 이상 변동이 있는 기관 등은 현장조사・실태점검 등 별도조치 계획

## 3 향후 일정

- 평가계획 수립·통보(국가기록원)
  - 평가계획(평가지표 포함) 평가대상기관에 통보: '18. 2.
- 평가 실시(평가대상기관, 국가기록원)
  - 평가대상기관은 자율평가 후 국가기록원에 공문 통보: '18.4.
  - 자율평가결과 검토 및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분석 : '18. 5.~6.
-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(안) 마련(평가대상기관, 국가기록원)
  - 기관평가 의견수렴 및 개선(안) 마련 : '18. 5.~9.
  - 기관평가 개선(안) 시범적용·보완 및 확정 : '18. 10.~12.